

「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정희 의원

2. 찬 성 자: 김낙관 의원 외 5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존재하는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고, 이를 활용함으로써 민족문화의 계승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,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개정
-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경비의 보조(안 제5조)
- 실태조사 및 기록화(안 제6조)
- 국가유산 교육(안 제7조~제8조)
- 국가유산 활용사업(안 제9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4조, 제11조, 제14조, 제25조, 제27조
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2조의2, 제22조의6, 제43조, 제72조
- 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시행(2024. 5. 17.)에 따라 구미시 관할 내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국가 정책 변화에 맞춰 ‘문화재’ 개념을 ‘국가유산’으로 전환함으로써 법령과의 일치를 도모하고, 행정적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실태조사 및 기록화(안 제6조) 추진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의 확보와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, 국가유산 교육 및 활용사업 또한 주민 참여 확대와 청소년·학생 대상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관내 국가유산의 배경과 의미를 지역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설명 안내, 축제 연계 등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